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8호 2016. 2. 12(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 1228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남원시 조례 제 1229 호 남원시 읍면동민의날 지원 조례안	9
○ 남원시 조례 제 1230 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남원시 조례 제 1231 호 남원예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 남원시 조례 제 1232 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 남원시 조례 제 1233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 남원시 조례 제 1234 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 남원시 조례 제 1235 호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2
○ 남원시 조례 제 1236 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 남원시 조례 제 1237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78
○ 남원시 조례 제 1238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4
○ 남원시 조례 제 1239 호 남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7
○ 남원시 조례 제 1240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 남원시 조례 제 1241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 남원시 조례 제 1242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 남원시 조례 제 1243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7
○ 남원시 조례 제 1244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 564 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1
○ 남원시 규칙 제565 호 남원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안 168
○ 남원시 규칙 제 566 호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4
○ 남원시 규칙 제 567 호 남원시 기업 및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4
○ 남원시 규칙 제 568 호 남원시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69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5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275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1228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읍·면	리 수	분리수	이장정수	자연 마을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157	<u>341</u>	<u>341</u>	437	<u>689</u>	<u>689</u>	
운봉	17	33	33	37	78	78	
주천	11	22	22	29	40	40	
수지	6	19	19	19	31	31	
송동	13	26	26	40	47	47	
주생	9	17	17	31	44	44	
금지	11	19	19	25	51	51	
대강	13	24	24	28	46	46	
대산	8	15	15	20	30	30	
사매	9	<u>20</u>	<u>20</u>	22	37	37	
덕과	6	15	15	23	29	29	
보절	9	25	25	30	40	40	
산동	7	15	15	19	45	45	
이백	10	21	21	23	42	42	
인월	9	<u>26</u>	<u>26</u>	28	<u>53</u>	<u>53</u>	
아영	11	26	26	28	38	38	
산내	8	<u>18</u>	<u>18</u>	35	38	38	

(중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사매	월평	1	손을	1	산2, 산14, 산15, 289-97, 291, 292, 323-1, 387, 558, 563, 569, 612-1, 622, 624, 627, 629, 632, 651, 653, 655-2, 656-1, 657-1, 658-1, 658-2, 994-1
		1	수월	1	334, 342, 343-1, 594-1, 596, 598, 609-1, 610-1, 611-1, 659, 660, 661, 664, 667, 668, 672~674, 675, 677, 676, 678-1, 679, 680, 682~683, 684-1, 685-1, 710-2, 732-1, 737, 742-1, 747, 748-1, 755-1, 756-1, 763, 768, 813, 817-1, 863, 865-1, 893

(중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인월	서무	1	신촌	1	621-3 ~ 621-7, 621-9, 621-10 ~ 621-13, 621-17, 623-2 ~ 623-8, 624-1, 624-9 ~ 624-11, 625-1, 625-2, 625-5, 625-7, 625-8, 626-3, 626-5, 626-6, 626-8, 627-1
				2	725-3 ~ 725-5 , 725-11, 726, 737-2, 737-4, 737-8 ~ 737-10, 737-12 ~ 737-14, 738-4, 738-7, 738-9 ~ 738-11, 738-13, 738-14, 739-3, 740-1, 741-1, 741-2, 741-3, 743, 744, 744-1, 772-3
				3	628-3, 632-6, 632-8, 636-3, 696-4, 698-3 ~ 698-6, 699-3, 700-1, 701-3, 702-3, 702-6, 704-3, 731-1, 731-11, 732, 733, 733-6, 734, 734-3, 734-5, 735, 735-5 ~ 735-11, 736-2, 736-11, 736-13, 736-16, 736-28, 736-30, 736-33
		1	동현	1	634-1, 635-1, 639-1, 641-1, 641-4, 645-7, 671-2, 678-2, 680-2, 681-1, 682-3, 688-9, 688-10, 688-12 ~ 688-14, 688-18, 688-36, 688-38, 688-39, 688-46, 688-52, 688-53, 688-58, 688-60, 688-64, 688-67, 688-70, 688-76, 688-78, 688-79, 688-102, 688-103, 689-2, 692, 694, 694-6, 696-5, 696-8, 696-18, 698-1, 699-1
				2	688-54 현미아파트
				3	683, 688-1, 688-57, 688-63, 688-80 ~ 688-82, 688-92
				4	688-8 동진아파트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인월	취암	1	취암	1	251~253, 253-1, 254, 267, 274, 285, 295, 296, 298-1~299, 300-1, 306, 308-3, 309, 309-1, 357, 373, 산26
				2	308, 311, 312, 313-4, 321, 322-1~328-1, 329, 330, 331, 338, 339, 341~343, 349, 390, 391, 462, 510, 611, 산37
				3	242-1, 310, 324, 337, 340, 344~346-1, 347~348, 350~356, 358-1, 362-12, 371-2, 372, 373-1~387-1
		1	동무	1	117, 154-1~166-5, 167, 172-1, 173, 173-1, 177~178, 189, 189-1, 190~196, 211~213, 224, 224-2, 589-9, 593-8, 593-11
		1	덕실	1	9-5, 9-12~9-19, 9-22, 9-33~9-36, 9-39, 9-42~9-46, 9-80, 28, 산11, 산24
	자래	1	자래	1	118~255, 260~271, 322, 323, 324, 324-1, 364-1
		1	연실	1	519~579-1, 580-4~580-17, 728-12

(중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산내	백일	1	백일	1	10, 35-1, 42-2, 43, 48-1, 50, 53-6, 72, 75-1, 76-4, 79, 80-4, 91
				2	76, 89-3, 122, 143, 150-1, 158-3, 160-6, 175, 176, 177, 178, 179-1, 180-1, 182, 183-4, 185-4, 206, 209-1, 210, 211, 212-1, 214-1, 217-3, 244-6, 245-1, 246-1, 247, 248, 250-1, 251-1, 252-1, 253, 255-1, 256-1, 257-1, 257-5, 258-1, 259, 261, 262, 265
				3	188, 189, 190, 190-1, 191-1, 192, 193-1, 492-4, 492-5, 494, 508, 510-3, 513-2, 513-6, 518-19
		1	원백일	1	340, 345-4, 370-1, 386-4, 393-3, 405-2, 405-3, 407-1, 409-3, 411, 412, 414, 416-1, 430-5, 431-1, 436, 439, 442, 444-1, 449, 449-1, 459-2, 465, 473-11, 532, 533, 534, 535, 536, 537, 539, 540, 542, 543, 544, 545, 547, 548, 549, 552, 553, 554

(중 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산내	부운	1	와운	1	111, 308, 316, 318, 325, 360, 362, 371, 373, 407, 675
		1	반선	1	215-3, 215-9, 239-10, 240, 252

(중략)

[별표 2]

남원시 등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행정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u>154</u>	<u>154</u>	<u>727</u>	<u>727</u>	
동충동	1	13	13	60	60	
죽항동	3	13	13	69	69	
노암동	3	16	16	70	70	
금동	3	<u>23</u>	<u>23</u>	<u>114</u>	<u>114</u>	
왕정동	3	14	14	63	63	
향교동	5	28	28	114	114	
도통동	5	<u>47</u>	<u>47</u>	<u>237</u>	<u>237</u>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금동	22	1	1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1동(101 ~ 1301, 102 ~ 1302)
			2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1동(103 ~ 1503, 104 ~ 1504)
			3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2동(101 ~ 1501, 102 ~ 1502)
			4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2동(103 ~ 1503, 104 ~ 1504)
	23	1	1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3동(101 ~ 1501, 102 ~ 1502, 103 ~ 1503)
			2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4동(101 ~ 1501, 102 ~ 1502)
			3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4동(103 ~ 1503, 104 ~ 1504)
			4	조산동 977번지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104동(105 ~ 1505, 106 ~ 1506, 107 ~ 1507)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할구역
도통동	45	1	1	월락동 5-15번지 풍산누리안 아파트 101동(101 ~ 1501, 102 ~ 1302, 203 ~ 1503)
			2	월락동 5-15번지 풍산누리안 아파트 102동(101 ~ 1501, 102 ~ 1202)
			3	월락동 5-15번지 풍산누리안 아파트 103동(101 ~ 1501, 102 ~ 1502, 103 ~ 1503, 104 ~ 1504)
			4	월락동 5-15번지 풍산누리안 아파트 104동(201 ~ 1501, 202 ~ 1502)
			5	월락동 5-15번지 풍산누리안 아파트 105동(101 ~ 901, 102 ~ 1402, 203 ~ 1503, 304 ~ 1504)
	46	1	1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1동(101 ~ 1501, 102 ~ 1502)
			2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1동(103 ~ 1503, 104 ~ 1504)
			3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1동(105 ~ 1505, 106 ~ 1506)
			4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2동(101 ~ 1501, 102 ~ 1502)
			5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2동(103 ~ 1503, 104 ~ 1504)
			6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2동(105 ~ 1505, 106 ~ 1306)
	47	1	1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3동(101 ~ 1501, 102 ~ 1502)
			2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3동(103 ~ 1503, 104 ~ 1404)
			3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4동(101 ~ 1501, 102 ~ 1502)
			4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4동(103 ~ 1503, 104 ~ 1504)
			5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5동(101 ~ 1501, 102 ~ 1502)
			6	월락동 산 8번지 양우 내안에 아파트 105동(103 ~ 1503, 104 ~ 1504)

[별표 3]

남원시 읍·면의 리 명칭과 구역

읍·면명	리 명	구	역
중략 사매	중략	중략	
		서도	노봉, 수촌, 서촌리 일원
		계수	수동, 계동 일원
		인화	인화리 일원
		화정	화정리 일원
		대율	대율리 일원
		월평	<u>수월, 손율</u> , 덕평리 일원
		오신	하신, 중신, 신촌, 오현리 일원
		관풍	풍촌, 관촌, 세동리 일원
		대신	대산, 상신리 일원
소계	9		
중략 인월	중략	중략	
		중군	중군리 일원
		인월	구인월, 신인월, 월평, 인월리 일원
		서무	서무, 계암, 사창, <u>신촌, 동현리</u> 일원
		취암	<u>취암, 동무, 덕실리</u> 일원
		건지	외건, 내건, 지산리 일원
		유곡	유곡, 도장, 성내리 일원
		상우	상우, 하우리 일원
		성산	성산, 용주, 장평리 일원
		자래	<u>자래, 연실리</u> 일원
소계	9		
중략 산내	중략	중략	
		중황	상황, 중황, 하황리 일원
		백일	<u>원백일, 백일리</u> 일원
		대정	중기, 대정, 매동리 일원
		장항	장항, 원천리 일원
		입석	입석, 삼화리 일원
		내령	내령리 일원
		부운	부운리, <u>와운, 반선리</u> 일원
		덕동	덕동, 달궁리 일원
소계	8		
후략	후략	후략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29 호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읍·면·동 별로 개최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민의 날(이하 “면민의 날 등”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읍·면·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 “발전협의회 등”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민의 날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발전협의회 등에게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신청)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면민의 날 등의 행사 개최일 2개월 전까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

민의 날 등의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30 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바탕으로 한”을 “바탕으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를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권장을 위하여 남원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 등 기타”를 “운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활동 등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 제목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지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으려는”으로, “체결하여 위탁하며”를 “체결하며”로, “위탁계약기간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을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를 “센터를 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제8항 중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경비를”을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수입·지출결산서”로, “회계년”을 “회계연”으로,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을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제4항 중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를 “자원봉사활동에”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을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을 “센터는 센터등록”으로, “시장에”를 각각 “시장에게”로, “의해 등록된 단체”를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은 센터”로, “대해 자원봉사센터에”를 “대해서 센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u>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에 따라 ----- --- <u>바탕으로</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자원봉사활동</u>"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u>자원봉사자</u>"라 함은 자원봉</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 1. "<u>자원봉사활동</u>"이란 ----- ----- ----- -----.</p> <p>2. "<u>자원봉사자</u>"란 자원봉사활</p>

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 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2. (생략)
-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4. · 15.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

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
----- 하거나
나 -----

-.

4. "자원봉사센터"란 -----

----- 따라 -----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1. ~ 12. (현행과 같음)
- 13. ----- 국외봉사활동
- 14.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

- 마련-----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 -

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2. (생략)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
 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권장을 위하여 남원시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주요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
 지 않도록 한다.

④ ----- 운영, 그 밖에 -----
 -----.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
 려·연계·활동 등을 위하여 남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 봉사단체 대표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 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

-----.

④ ----- 센터장 1명-----

-----.

⑤ 센터-----

----- 센터
를 법인으로 -----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 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 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 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
-----.

제10조(센터의 지원) ----- 센 터-----경비 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서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 회계연도-----
-----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
----- . ----- 변
경하는 경우에도 -----
-.

② ----- 회계연도의 수입
·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
----- .

③ ----- 수
입·지출결산서 -----
----- 회계연-----
-----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

다.

<신 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생략)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

산의 범위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원봉사활동에 -----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 다음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
-----.

제17조(보험가입) ① ----- 센터 -----

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

----- 따라 등록된 자원 봉사단체에 소속된 -----

-----.

② 제1항에 따라 -----
----- 경우 -----

-----.

1. 센터는 센터등록 -----
----- 시장 에게 -----

----- 따라 등록된 자원봉 사단체 -----
시장에게 -----
----- .

2. 시장은 센터 -----
----- 대해서 센터에 -----
----- .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시 보

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
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
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
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
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
-----.

제18조(실비 지급) -----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

제19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31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예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예촌”이란 남원시 고샘길 56 일원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전통한옥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남원예촌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남원예촌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원예촌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남원예촌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 3. 남원예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 4. 남원예촌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남원예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리·운영

제4조(관리 등) ① 남원예촌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남원예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남원예촌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수입금 등의 처리) 남원예촌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주요 공공시설의 이용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남원예촌 사용자에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별칭사용) 남원예촌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

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

③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자 책임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3장 위탁 운영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남원예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

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남원예촌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남원예촌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남원예촌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남원예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시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남원예촌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

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전대(轉貸)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1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남원예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남원예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면적(m ²)	정원	객실 수	사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20.5~21.0	2인/3인	5	120,000	16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 입실 당일 15:00, 퇴실 익일 11:00 기준. 단 1일 사용 시간인 20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2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4. 객실별 구들 체험비 포함 5.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사용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6. 주말은 금·토요일, 법정공휴일 하루 전일을 의미
25.2~29.1 (일반형)	2인/4인	7	150,000	190,000	
37.75~44.15 (대청형)		8	170,000	220,000	
58.75	4인/6인	2	220,000	280,000	
95.35 (대청형)	4인/6인	1	380,000	500,000	
131.85 (누마루형)		1	420,000	54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다목적동	대관	1회	100,000	150,000	1. 1회 사용기준 : 09:00시부터 2시간 단위 적용. 2. 숙박객은 사용료 50% 감면. 3. 냉방 : 6월~8월은 의무적 가동 난방 : 12월~2월은 의무적 가동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4. 대관은 음향, 영상시설 등 포함
	난방	1회	15,000		
	냉방	1회	20,000		

【별표 2】

남원예춘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감 면 율(%)
1. 남원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50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30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20
5.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6. 국민 및 수행자, 외국사절 및 수행자	50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도 50

※ 사용료 감면기준은 가장 높은 경우 하나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별표 3】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배상 및 환불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1.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3.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4.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1.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3.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4.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3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1232 호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회 위원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사항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행정·장애인복지·자활지원·희망복지지원·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복지담당,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성별분리 통계 구축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장애인복지·자활지원·희망복지지원·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토 후 선정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하 “실무분과장”이라 한다)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자원 발굴 및 연계
- 2.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3.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당연직 또는 위촉직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常勤)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

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시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1233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주민에 대하여”를 “주민에게”로, “지원 함으로써”를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10,000원”을 “1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란을 “노인세대”란으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우리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를 “제32조에 따라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모·부자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호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남원순창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를 “저소득주민으로”로, “자로”를 “세대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세대
3. 한부모가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를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8조 중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급대상자가”를 “지급대상이”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대상자가”를 “대상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실한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제1항제4호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확인된 때”를 “확인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등으로</u> ----- ----- <u>주민에게</u> ----- ----- ----- <u>지원하여</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u>10,000</u> 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3. "<u>65세 이상 노인세대</u>"란 전 세대원이 <u>건강보험료</u>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u>우리시</u>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p> <p>4.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u>우리시</u>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p> <p>5. "<u>모·부자 세대</u>"란 「한부모</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제7조제1항제1호</u> 및 <u>제3호</u>에 따른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u>----- <u>1만원</u> ----- -----.</p> <p>3. "<u>노인세대</u>"란 ----- ----- <u>국민건강보험료</u> -----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p> <p>4. ----- -<u>제32조에 따라 시</u>에 ----- ----- -----.</p> <p>5. "<u>한부모가족</u>"이란 「한부모가</p>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소년·소녀가장 세대"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남원순창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 노인세대
2. (생략)
3. 모·부자세대
- 4.·5. (생략)

제4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남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6. -----
-----제15조-----

-----.

7. -----

----- 따른 -----
-----.

제3조(지원대상) -----
----- 저소득주민으로 -----

----- 세대로 -----
-----.

1. 노인세대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가족
- 4.·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조사) ① 시장은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자료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
-----.

제7조(조사) ① ----- 지원대상
----- 이하에 -----

-----.

② ----- 국민건강보
험료-----

-----.

제8조(자료관리) ----- 지원대
상 -----
-----.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
 ----- 지급대상이 -----

 -----.

1. 대상이 -----

2. -----
 ----- 상실한 경우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4. ----- 방법으로 -----
 ----- 확인된 경
우

② 제1항-----

 ----- 따
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34 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종합복지관(이하 “복
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를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복지관”을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6호 중 “장애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상 수급자를 우선한다”를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게”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담금 및 기타”를 “부담금,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며,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제6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받”을 “위탁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가 동”을 “수탁자가”로,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경우에는”으로,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남원시에 기부채납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를 “다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할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반할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사전”을 “사전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장애인 <u>종합복지관</u>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u>이의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59조에 따라</u> ----- ----- <u>종합복지관을 설</u> <u>치하고 그 운영에</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장애인</u>"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6</p>	<p>제2조(정의) ----- "<u>장애</u> <u>인</u>"이란 ----- ----- -----.</p>
<p>제3조(위치) <u>복지관</u>은 남원시 이백면 답피안길 87에 둔다.</p>	<p>제3조(위치) <u>남원시 장애인 종합</u> <u>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u> <u>다)</u>---.</p>
<p>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u>장애단체</u> 육성에 관한 사항 7.·8. (생략) 9. <u>기타</u>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조(업무 및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 <u>장애단체</u> ----- 7.·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 -----
<p>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p>	<p>제5조(이용대상) -----</p>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으로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

-----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하여 운영 -----
--.

② ----- 운영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③ -----
--- 따라 -----
---.

④ -----
----- 부담금, 그 밖에 -----
-----.
----- 경우에
는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⑤ -----

배치기준(정원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범위-----
 범위-----

----- 수 -----

----- .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⑥ -----
 -. -----
 ----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제4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탁받-----

----- .

④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남원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수탁자가 -----
----- 신축·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보강할 경우에는
는 ----- 받아
야 -----
-----.

⑤ -----
- 따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

제9조(감독) ① ----- 관계 공무원에게 -----
----- 그 밖에 -
-----.

② ----- 제1항에 따른 -----

-----.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

----- 경우에
는 -----.

1. ----- 위
반한 경우
2. -----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생략)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위반한 경우

4. -----
-----발생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

-----.
----- 사전에 -----
-----.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1235호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236 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를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로,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를 “수익·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로, “부담 및 기타”를 “부담·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제16조에 따
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 제1항 중 “수납하고자”를 “수납”으로,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를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의료시설”을 “의료급여기관”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송부받은”을 “받은”으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를 “지급명령을 내려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상환 등)”을 “(대지급금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

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한 날부터 3월”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 제3항 중 “대불상환의무자”를 “대지급상환의무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의거”를 “따라”로,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

면·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에 따른</u>----- -----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p>
<p>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u>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u>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u>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u></p>	<p>제2조(세입·세출)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u>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잉여금·</u> ----- <u>수익·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u> ----- ----- <u>부담·그 밖의</u> -----.</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p> <p>② 삭제</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u>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u> ----- -----.</p> <p>② 삭제</p>
<p>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u>회계관계공</u></p>	<p>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u>회계관계공</u></p>

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1.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수입) ① -----
---- 수납 -----
-----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적어야 -----.

③ -----
----- 발급-----
-----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

제6조(지출) ① -----
----- 의료급여기관-----
경우에는 -----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상환 등)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

보내야 -----.

② 제1항에 따라 -----
----- 받은 -----
----- 지급명령을 내려야 -----.

제7조(대지급금상환 등)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
-----.

1. 대지급금액-----
2. 대지급금액-----

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독촉 등) ①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
-- 대지급상환의무자-----

-----.

제8조(독촉 등) ①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 경우에는 -----
----- 6개월
이내-----
--- 따라 -----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경우에는 -----
따라 -----.

제9조(결손처분) -----

- 경우에는 ----- 대지급금-----.

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
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2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
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1. -----
된 경우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
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
가능한 경우(읍·면·동장의
확인파 남원시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
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
한다)

제10조(준용) -----
----- 따
른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 금 내용	대지금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 금 내용	대지금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 금 내용	대지금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 금 내용	대지금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〇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〇 〇 〇 장 ㉠ 분 임 수 입 원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상환의무자	생년월일	주 소	
독촉구분	고지번호	분 기 별	대지급상환금
제 차	제 호	년 분	금 원
제 차	제 호	년 분	금 원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㉞			

독 촉 장 수 령 증
◦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㉞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수급권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의료급여기관명		주소	
급여 비용	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현금납부액		
	대지급금신청액		
<p>「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p> <p>남원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p> <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비고</p> <p>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237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능보강사업”이란 신축,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 ② 두레사랑방은 위 설치기준을 갖추고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경로당 중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신축·증축·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등) 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며 별표의 지원내역 범위에 한정한다.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5.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① 시장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설계·감리비 및 건축인허가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기능보강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를 기초하여 지원한다. 다만, 장비 보강은 제외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④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에 단독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건축
2. 신축
3. 기능보강사업(균열, 누수에 따른 개보수)
4. 장비보강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축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1개소만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회원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 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

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

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면·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면·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원에 한정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당)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 금액 100만원 이상 (1건 당)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38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부서의 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원시 지방세심의 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39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원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 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40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 및 영”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을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을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를”을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로, “말일”을 “31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마을에 대하여”를 “마을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유지하도록 하여야”를 “유지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명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명하여야”를 “조치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일로부터”를 “만료일부터”로, “명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하고자 하는”을 “배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배출하고자 하는”을 “배출하려는”으로, “”일반용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완료시까지)로 인한”을 “완료시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 대하여”를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항제1항 중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분홍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를 “변경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제2호 중 “규격봉투에 대하여”를 “쓰레기봉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현금으로 환불”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자로 하여금”을 “한다)자에게”로,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영·시행규칙”을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

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업자에 대하여”를 “처리업자에게”로,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가구당 연 1,300원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 제18조”를 “제18조”로,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일반용봉투”를 “사람에게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18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을 “독립채산지역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h2 style="margin: 0;">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h2>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업소 위치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뒷쪽)

< 변경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시행에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 ----- -----</p>
<p>5. · 6. (생략)</p>	<p>5. · 6. (현행과 같음)</p>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

-----수거 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

-----.

② -----지
정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을 -----
-----31일 -----
-----.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마을
은 -----
-----.

제4조(적용범위) -----

등으로 -----

-----.

제5조(청결유지 책무) -----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일반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일반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

② -----

-----만료일
부터 -----
-----하여야
-----.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배출하려는 -----

-----.

1. -----배출하려는 -----

----- "쓰레기봉투"-----

-----<단서 삭제>

2. -----

-----배출할
수 있다. ----- 환경관리원

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한 소각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50퍼센트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

-----.

-----.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삭 제>

에 지급하되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 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음식물쓰레기는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

-----.

- 1. (현행과 같음)
- 2.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
-----.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
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
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
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
매소 지정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규격
봉투에 대하여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3. (생략)

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
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
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
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
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쓰
레기봉투는 -----

-----.

3. (현행과 같음)

4. -----

----- 판매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 -----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할 -----

② -----

-----한다)자에

게 -----

-----분명하게 적

어 -----.

1.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영·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

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
-----처리업자에게 -----

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이 조례에서 수수료의 징수
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
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반용봉투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
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
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

-----.

③ (현행과 같음)

④ -----
-----외의 -----
-----.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
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자

2. (현행과 같음)

② ----- 쓰레기
봉투-----

-----.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쓰레기봉투-----

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

-----따라 -----

-----독립채산지역은 -----

-----.

제22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241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축사육으로 인하여”를 “가축사육으로”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명령하고자”를 “명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시행에</u> ----- ----- -----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배출시설"이란 <u>가축사육으로 인하여</u>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 8.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가축사육으로</u> ----- -----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생략)</p> <p><신 설></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u></p>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매어둔 가축의 경우
2. ~ 4. (생략)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의 경우
6. ~ 8. (생략)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생략)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1. -----

위하여 -----

2. ~ 4. (현행과 같음)

5. -----

----- 위하여 -----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에게 -----

있다.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

-----.

----- 명령 -----

-----.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지]<개정 2012.8.14., 2015.2.10., 2015.8.7. 2016. 2. 1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li style="padding-left: 20px;">- 동충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죽향동 <li style="padding-left: 20px;">- 하정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쌍교동 <li style="padding-left: 20px;">- 노암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신촌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어현동 <li style="padding-left: 20px;">- 금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천거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조산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왕정동 <li style="padding-left: 20px;">- 향교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산곡동 <li style="padding-left: 20px;">- 도통동 <li style="padding-left: 20px;">- 월락동 <li style="padding-left: 20px;">- 고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li style="margin-top: 10px;">○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육우의 경우: 30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매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을 갖춘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지리산청정지역인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지역은 예외로 한다) <li style="padding-left: 20px;">-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 중 1종 이상을 말한다.

소규모 마을 대상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지원계획 대상지를 말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42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동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 법 제6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본문 중 “”신·증설”을 “”신설·증설”로, “국내·외기업에 대하여”를 “국내·외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사람을”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영위”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1,0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에서 호선”을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제4조 제2항제6호 중 “투자유치에 관하여”를 “투자유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시장이 부의”를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장이 부의”를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기 만료 전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간접적”을 “직접·간접적”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 “위원회는 각”을 “각 위원회는”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각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활동에 대하여는”을 “활동은”으로, “가 정하는 바에”를 “에”로, “여비 및”을 “여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를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3호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는”을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 기업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부분에 대해”를 “부분에”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신·”을 “신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을 “신설·”로 하며, 제1항제2호 중 “잔여부지”를 “남은 부지”로, “신·”을 “신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을 “신설·”로, “부분에 대해”를 “부분에”로, “1회에 한 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을 “신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을 “신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기업에 대해”를 “기업에”로, “부분에 대해”를 “부분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장등록일로부터”를 “공장등록일부터”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영위하기”를 “경영하기”로, “부분에 대해”를 “부분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하여”를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시장”을 “시장”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을 “기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다만, 제1항”을 “제1항”으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을 “이전기업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의”를 “외의”로,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를 “시의회의 협의를 마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해”를 “사항을”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부분에 대해”를 “부분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를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 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 정하는 바에”를 “에”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을 “투자기업의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의”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금액에 대해”를 “금액에”로 한다.

제25조 중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를 “외국인투자”로, “각각”을 “각”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을 “또는 분할납부”로, “에서 정하는 바에”를 “를”로 한다.

제27조 중 “및 영 제25조제1항”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해”를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하여”를 “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하고자”를 “유치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61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탁 및 약주 제조업(11111)”을 “(1

061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외 기타”를 “밖에”로, “도자기 및 기타”를 “도자기,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 기타”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업에 대하여”를 “기업에”로, “거쳐”를 “마친 후”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정지원에 관하여는”을 “재정지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를 “다른 지원사항 외에”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을 “투자기업은”으로,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를 “다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31조 중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업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하며, “차등”을 “보조금을 차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를 “규칙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시 소속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에”로, “인정될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를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로, “휴·폐업한 때”를 “휴업·폐업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축소한 때”를 “축소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못할”을 “못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및 다른”을 “및”으로 한다.

제3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허위”를 “거짓”으로, “때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를 “기업은 시의회의”로 한다.

제4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17. (생략)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 외의 토지를 말한다.

19.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복귀 하는 것을 말한다.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1. · 22. (생략)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

----- 자
를 -----.

17. (현행과 같음)

18. ----- 외
의 -----.

19. ----- 같은 종
류 ----- 경영 -----

-----.

20. -----

----- 일부를 -----
-----.

21. · 22. (현행과 같음)

23. -----

----- 1천억원 -----

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생략)
-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

24. -----

----- 위하여 -----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

- 1.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
- 2. ----- 심의위원회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

시의원

- 3. ~ 5. (생략)
- 6.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2. (생략)
-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3. ~ 5. (현행과 같음)
- 6. ----- 투자유치에 -----
- ③ 각 위원회 -----.

제5조(위원회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 6. -----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
- ② -----.

- 1.·2. (현행과 같음)
- 3. -----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각 위원회 위원 ----- 차례만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② 위원 -----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③ -----
----- 업무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 -----

---- 위원 -----

-----.

1.·2. (현행과 같음)

3. 직접·간접적 -----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각 위원회는 -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도권 이전기업
- 2. 지방 신·증설 기업

----- 해당 -----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
----- 활
동은 -----
----- 에
----- 여비,

-----.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 ① -----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삭 제>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
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3
호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
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
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
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
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증설 보
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 기업은 -----

-----.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 경영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
는 -----
-----부분에-----

-----.

제14조(관내기업의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① -----

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기존 잔여부지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

- 1. (현행과 같음)
- 2. ----- 남은 부지 -----
 - 신설 . -----

3. (현행과 같음)

② -----
 ----- 신설 .-----

 - 부분에 -----

한 번만 -----.

③ ----- 신설 .-----

 -----.

- 1. -----
 - 신축 .-----

- 2. -----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
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
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
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
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 따라 -----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

----- 기업에

----- 부분에

----- . -----
----- 공장등록일부터 -----
----- .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
----- 경영하기 -----

----- 부분에 -----

----- .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
업장 부분의 취득은 투자금액에
서 제외한다.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
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
동차에 대하여 500대를 초과하
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
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
하는 매매차액에 한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
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
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생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략)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 ---

----- 한정한
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 -----

----- 기업은 -----

1. -----

----- 한정함

2.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이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② 제1항 -----

----- 이전기업은 -----

-.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
----- 외의 -----
----- 시의
회의 협의를 마친 후 -----

-----.

1. -----
----- 따라 -----

2.·3. (현행과 같음)

② -----

----- 사항을 -----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
 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
 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 또는 분할
 납부 -----

 를 -----.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 사항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게 --

 -----.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유치하려고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위하여 -----

-----.

- 1. -----(10611), -----

- 2. 그 밖에 -----

----- 밖에 -----

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생략)

③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특례)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에 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 도자기, 그
밖에 -----

그 밖에 -----

3. ---- 밖에 -----

4. (현행과 같음)

③ ----- 받으려는 자는 -
-----.

④ -----

하여야 -----.

제30조(지원특례) ① -----
----- 경영 -----

-----.

② -----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

기업에 -----
----- 마친
후 -----
----- 경
우에만 ----- . -

재정지원은 -----
----- .

③ ----- 따른 지원
사항 외에 -----

----- 투자기업은

-----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

----- .

④ ----- 따른 시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
----- .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
-- 기업 중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보조금을 차등----- .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삭 제>

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 및 시의 다른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시장은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의 투자보조금 지원예정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삭 제>

제33조(보조금 정산) -----

규칙에 -----

-----.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

----- 경우에는

-----.
-- 공무원에게 -----
-----.

② -----
----- 시 소속
공무원에게 -----
-----.

③ -----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생략)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폐업한 때
- 3.·4. (생략)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할 때
7.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
-----.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거짓, 그 밖에 -----
----- 인정한 경우
2. -----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 휴 업·폐업한 경우
- 3.·4. (현행과 같음)
5. -----

----- 아니한 경우
6. -----
----- 축소한 경우
7. -----
----- 경우
8. -----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지원 등)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업·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

-- 못한 -----

③ -----
----- 경우에는 -----
-----.

제36조(포상금 지원 등) -----

- 공무원에게 -----

및 -----
-----.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
----- 따라 -----
----- 거짓 -----
----- 경우에는 --

-----.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
----- 따라 -----

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기업인 우대)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기업인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업은 시의회
의 -----

-----.

제40조(시행규칙) ----- 시
행에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43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p> <p>① · ② (생략)</p> <p>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u>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u></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조례 제 1244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0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생략)</p> <p>1.~ 9. (생략)</p> <p>10.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신설></p> <p>② (생략)</p>	<p>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1.~ 9. (현행과 같음)</p> <p>10. <u>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u></p> <p>11.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회를 거친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564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중 “2년”을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담당자 등이”를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 가”로,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를 “감사대상기관, 부서”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우 감사담당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등에 대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감사”를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을 “감사대상기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사 성과”를 “감사의 성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복감사 지양) 감사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 중 “감사대상기관의 주”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 중 “신빙성”을 “신뢰성”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8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과”를 “병과(併科)”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적용한다.”를 “적용”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받는”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이상이 소요되는”을 “이상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그 감사결과”를 “감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발견된 때”를 “발견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발견된 때”를 “발견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때와”를 “경우와”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복에 관하여는”을 “불복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 중 “그 이행결과”를 “이행결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감사실이”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등을 할 때 우대”를 “등에 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2조 중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제 31조 관련)

주 소:
소 속:
직위와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문: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후면)

문: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3년 이내-----.</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감사의 방법) ① (생략)</p> <p>② 감사에 <u>소요되는</u>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과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조(감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드는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u>감사담당자</u>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 감사담당자</u>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u>감사대상이 되는 기관</u>,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p>	<p>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 <u>감사담당자</u>, 외부 전문가(이하 "<u>감사담당자</u> 등"이라 한다) 가 ----- <u>해당</u></p> <p>1. <u>감사대상기관</u>-----</p>

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생략)

제6조(청렴의무 등) ① (생략)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

2. 감사대상기관, 부서 -----

3.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은 -----
-----.

④ -----

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 경우에는 -----

-----.

제10조(감사의 생략) -----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 감사대상기관은 -----

-----.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의 -----

-----.

제11조의2(중복감사 지양) 감사 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 3. ~ 6. (생략)

제14조(자료제출 요청) ① (생략)

②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 1.·2. (생략)
- ⑤ (생략)

⑤ -----

-----.

- 1. (현행과 같음)
- 2.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

-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제출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으면 -----
-----.

③ -----

경우에는 -----
적은 -----.

④ -----

----- 경우에는 -----
-----.

- 1.·2.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8. (생략)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생략)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8.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생략)

2. 경고·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

5.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8.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병과(併科) -----.

1. ~ 5. (현행과 같음)

6. -----

- 등에게 -----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생략)

⑤ (생략)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3. (생략)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제22조(감사결과 공개) 시장은 감

---- 적용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 경우에는 ----

-----.

1. -----
----- 받은 -----

2.·3. (현행과 같음)

4. -----

-----.
----- 이상 필
요한 -----

제22조(감사결과 공개) -----

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

----- 감사
결과-----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
----- 경우에는

----- .

1. -----
----- 발견
된 경우
2. -----
----- 발
견된 경우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
----- 경우와 -----
----- 경우에는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

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 경우에는 -----

----- . -----
--- 불복은 -----

----- .

② -----

----- 경우에는 -----

- 경우에는 -----
----- .

③ -----
----- 없으면 -----
----- .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

이행결과 -----
----- .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
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
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
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
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
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감사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략)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

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
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

-----.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

---- 등에 우대-----.

② -----

----- 없으면 -----
-----.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
 정」에 따른다.

제32조(준용) -----

 ----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회를 거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 565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남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의 작성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여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적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붙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 연도·세입 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

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붙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 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을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 수납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 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 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
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
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
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
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
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
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이월액에 취소로 발생된 금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더하여 적는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결손처분된 자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

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록

제25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6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7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8	수납부	
9	징수부	
10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11	이월 체납액 정리부	
12	지방세 부과징수(경정) 결정서	
13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4	지방세 체납정리표	
15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6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17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18	배분금전 예탁통지서	
19	배분계산서	
20(갑)	결손처분표	
20(을)	결손처분표	
21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input type="checkbox"/> 징수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 세	가 산 금	계
	항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록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축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u>주 거 확 인</u>			<u>재 산 확 인</u>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극빈자 확인</u>			<u>재조사 확인</u>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년	월	일	(인)
담 당		총	당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환 급 금 총 액	과 오 납 연 월 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총 당 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 세 번 호			주	소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 납 부 정 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9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 권 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채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 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②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0호서식 (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가·허가사항 그 밖에 재산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회를 거친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 566 호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작성 등) 남원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

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

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적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3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4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5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6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8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0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1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16	건축물조사표	
17	주택조사표	
18	선박조사표	
19	항공기조사표	
20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21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22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23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24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25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26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27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28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9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남원시)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남원시)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세 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남원시)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 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남원시)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남원시)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 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 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남원시)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결재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담당자	담당	과장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남원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남원시)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울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납원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 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고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	--	--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택조사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남원시)			
접수번호	토지면적	성명(법인명)	상 호	납세자소	과표세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건물면적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작성요령

□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작성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작성합니다.

□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작성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작성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전화 : 620-6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남원시)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 일

남원시 규칙 제 567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외의”를 “외의”로, “준용하여 운영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를

“기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는 남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또는 시장”으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증설”을 “신설·증설”로, “각각”을 “각”으로,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보조금 지원)”을 “(관내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제5조 중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신·증설”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 신설·증설”로, “교부일로부터”를 “교부일부터”로 한다.

제6조 중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로 한다.

제7조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로, “10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를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신청서”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지정일로부터”를 “지정일부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기준일로부터”를 “신청기준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를 “마친 후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기업에 대하여”를 “투자기업에”로, “거쳐서”를 “마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을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으로, “이외의”를 “외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급일로부터”를 “지급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거쳐”를 “마친 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흠결로 인해”를 “흠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적극

적으로 유치하고자”를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를 “변경”으로 한다.

제16조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를 “지원되”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산에 관하여”를 “정산에”로 하며,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공장가동일로부터”를 “공장가동일부터”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에 대해”를 “기업에”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남원시”를 “시”로, “사람으로”를 “자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직원인”을 “임직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우수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일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때에는 당해기업”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으로, “1명에게”를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거쳐”를 “마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허가 등”을 “인가·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무원에 대해서”를 “공무원에게”로, “이외에”를 “외에”로, “실적가점”을 “실적 가산점”으로 한다.

제21조 중 “1,0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 관련)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text{○ 투자액 적용 보조금} = [\{ \text{투자액} - 10\text{억원(공제액)} \} \times \text{지원비율}] \times \frac{30}{100}$$

$$\text{○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 - 10\text{억(공제액)} \} \times \text{지원비율}] \times \frac{70}{100}$$

$$\text{○ 투자고용계수} = \frac{\text{종업원수(명)}}{\text{투자액(억원)}}$$

* 종업원수 : 투자보조금 정산시의 상시고용인원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뒤쪽)

붙임서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 가. 제조업: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남원시와 투자협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필지가 1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목록 작성요망)
 (단, 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를 증명해야 함)
-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 3. 기반시설(진입도로, 주 출입구 변경, 도시가스, 전기, 오피수 시설) 관련 계약서 및 설비내역서 사본 1부
-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단,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로 대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기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④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
 의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

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① 조
 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
 도권 이전기업 등의 보조금 지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
 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
 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한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투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착공한 기업에 한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

④ ----- 외의

 ----- 준용한다.

제3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

의 지원) ① -----

기업의 -----

 -----.

② -----
 ----- 지원받으려는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 --.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 한정한다. --
 ----- 또는 시
장 -----
 -----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5조(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신·증설 사항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② -----

----- 신설·증설 -----

--- 각 -----
----- 경우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원받으려는 자는 -----
----- 날부터 -----

-----.

제5조(관내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
-----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 신설·증설 -----
----- 교부일부터 -----

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구입 당시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도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에 제1

-----.

제6조(창업기업의 지원) -----
-----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

-----.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 지원받으려는 자는 -----

따른 -----

----- 따른 -----
----- 한 번만 -----

-----.

제8조(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

지원받으려는 자는 -----

-----.

제9조(고용보조금) ① -----

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3. 연구소는 연구 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에 한함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

- 1. (현행과 같음)
- 2. -----

----- 한
정함
- 3. -----
----- 한정함

② -----

 ----- 또는 건축허가일부
터 -----
 -----.

③ ----- 지원받으려
는 자는 -----

 -----.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부터 5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② (생략)
-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 1. (현행과 같음)
- 2. -----

----- 한정함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또는 건축허가일
부터 -----

----- 한정하여 -----.

- ④ ----- 지원받으려는 자는 -----
----- 신청서를 -----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 ① -----

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 (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 계약일, 남원시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2. (생략)

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액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

 ----- 받으려는 자
는 -----

 ----- 마친 후
한 차례만 -----
 ----- .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
받으려는 자는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투자기업에 -----

 ----- 마친 후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 지원 등의 신청서를

⑤ -----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 외의 ----- 한
정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① ----- 제1항
----- 지급일로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원받으려는 자는 -----

-----.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

----- 지원받으려는 자는 -----

-----.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① -----

시 보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흠결로 인해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한 날부터 1
 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적
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
 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
 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는 해
 당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
 청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투자금
 액은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변경
 등록일까지의 투자에 한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
 한 경우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투자이행
 에 대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

-----날부터-----

-----마친 후-----

-----.

-----흠으로-----

-----.

② -----

-----사항은-----

-----.

③ -----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

-- 경우에는 -----

-- 붙여야 -----.

④ -----

-----한정한다.

⑤ -----

-----제4항-----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기로 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담보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

 -----.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1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
지원되 -----

 -----.

제17조(보조금 정산)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정산) ① -----

자는 -----

날부터 -----
 -----.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 정산에 -----
 ----- 지방보조금 -----
 -----.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간 카드화하여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

 ----- 위하여 -----
 ----- 공장 -----
가동일부터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허가 업무 및

-----.

② ----- 기업에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

-----.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

----- 시 -----

----- 자로
-----.
----- 임직원인 -----
-----.

② -----
----- 인가·허 -----

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⑦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가 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인 우대) 시장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업인의 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

⑦ -----
----- 공무원에게 -

외에 -----
----- 실적 가산
점 -----.

제21조(기업인 우대) -----

-- 1천억원 -----

-----.

남원시 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2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 568 호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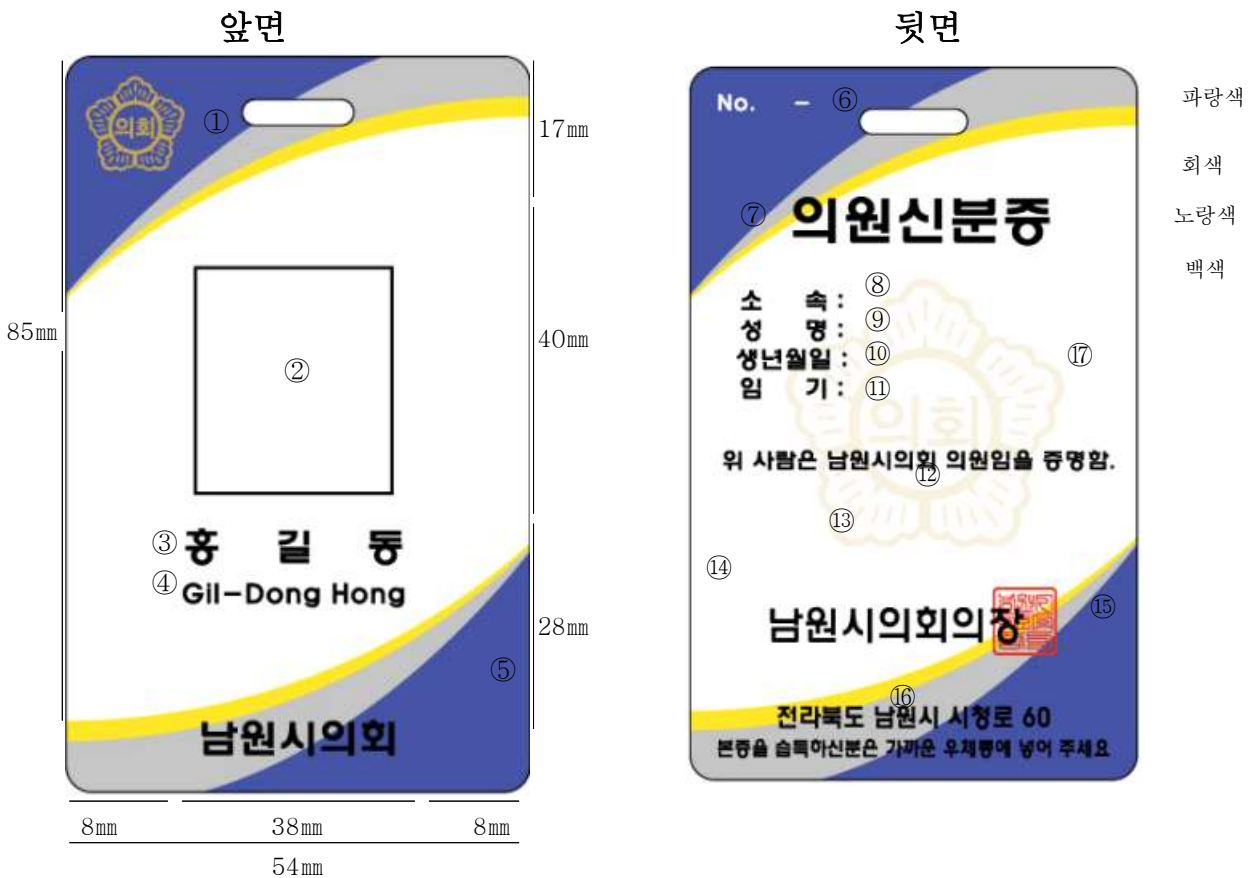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 ① 남원시의회 마크
- ② 사 진 : 38cm × 40cm
-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 ⑤ 자치구의회명(남원시의회)
- ⑥ 발급번호
- ⑦ 의원증 제목
- ⑧ 소속
- ⑨ 성명
- ⑩ 생년월일

- ⑪ 임기
- ⑫ 증명내용
- ⑬ 발급년월일
-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남원시의회의장)
-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 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 ⑰ 의회 회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회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읍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1호]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비고

[별지2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신분증번호 :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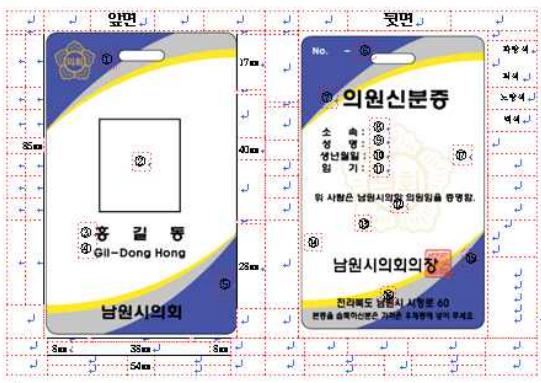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p> <p>1. 규격 및 제식</p> <p>가. 규격 및 제식</p> <p>전면</p>  <p>후면</p> <p>나. 색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란색(의회마크) = 청(5) : 격(10) : 황(65) : 먹(5) 2) 하늘색1(의회마크) = 청(20) : 격(0) : 황(0) : 먹(0) 3) 하늘색2(물결무늬) = 청(40) : 격(0) : 황(0) : 먹(0) 4) 파란색 = 청(80) : 격(0) : 황(0) : 먹(0) 5) 청 색 = 청(80) : 격(30) : 황(0) : 먹(0) 6) 격 색(직인) = 청(0) : 격(90) : 황(90) : 먹(5) <p>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p> <p>2. 기재사항</p> <p>가. 신분증 전·후면(글자의 크기·종류 및 기재방식)</p> <table border="1" data-bbox="175 1411 702 1814"> <thead> <tr> <th>구 분</th> <th>글자 크기</th> <th>글자 종류</th> <th>기재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의회취장(앞면)</td> <td></td> <td></td> <td>9mm×9mm</td> </tr> <tr> <td>의원신분증표기</td> <td>20pt</td> <td>HY용종도</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사진</td> <td></td> <td>30mm×40mm</td> <td></td> </tr> <tr> <td>한글성명</td> <td>20pt</td> <td>나눔명조OTF</td> <td>2타 피어쓰기</td> </tr> <tr> <td>영문성명</td> <td>10pt</td> <td>HY용종도</td> <td>1타 피어쓰기</td> </tr> <tr> <td>기관명(한글)</td> <td>17pt</td> <td>HT옛글</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기관명(영문)</td> <td>8pt</td> <td>윤고딕 120</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남원시의회의원 표기</td> <td>18pt</td> <td>HY용종도</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td> <td>8pt</td> <td>윤고딕 130</td> <td>내포문 윤고딕 135 왼쪽 정렬</td> </tr> <tr> <td>신분증명 문안</td> <td>7pt</td> <td>윤고딕 130</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발급일자</td> <td>7pt</td> <td>윤고딕 135</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발급기관장의 명외</td> <td>9pt</td> <td>HY용종도</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발급기관 직인</td> <td></td> <td></td> <td>7.9mm×8.1mm</td> </tr> <tr> <td>의회 주소</td> <td>13pt</td> <td>HY용종도</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의회 전화번호</td> <td>13pt</td> <td>HY용종도</td> <td>가운데 정렬</td> </tr> <tr> <td>의회취장 배경</td> <td></td> <td></td> <td>42.6mm×39.4mm</td> </tr> </tbody> </table>	구 분	글자 크기	글자 종류	기재방식	의회취장(앞면)			9mm×9mm	의원신분증표기	20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사진		30mm×40mm		한글성명	20pt	나눔명조OTF	2타 피어쓰기	영문성명	10pt	HY용종도	1타 피어쓰기	기관명(한글)	17pt	HT옛글	가운데 정렬	기관명(영문)	8pt	윤고딕 120	가운데 정렬	남원시의회의원 표기	18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8pt	윤고딕 130	내포문 윤고딕 135 왼쪽 정렬	신분증명 문안	7pt	윤고딕 130	가운데 정렬	발급일자	7pt	윤고딕 135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장의 명외	9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 직인			7.9mm×8.1mm	의회 주소	13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의회 전화번호	13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의회취장 배경			42.6mm×39.4mm	<p>[별표]</p> <p>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p> <p>앞면</p>  <p>뒷면</p> <p>1. 위의 ㉑~㉗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원시의회 마크 ② 사 진 : 38cm × 40cm ③ 한글성명 : 홍길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자치구의회명(남원시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p>⑨ 성명</p> <p>⑩ 생년월일</p> <p>⑪ 입기</p> <p>⑫ 증명내용</p> <p>⑬ 발급년월일</p> <p>⑭ 발급기관장의 명(남원시의회장)</p> <p>⑮ 발급기관장의 직인</p> <p>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p> <p>⑰ 의회 취장 배경바탕</p> <p>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p> <p>3. 색도는 다음과 같다.</p> <p>가. 파랑색 : R(80), G(80), B(255)</p> <p>나. 회 색 : R(190), G(190), B(190)</p> <p>다. 노 랑 : R(254), G(233), B(4)</p> <p>라. 의회취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p> <p>*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p> <p>4. 인쇄사항은 읍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p> <p>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p>
구 분	글자 크기	글자 종류	기재방식																																																																		
의회취장(앞면)			9mm×9mm																																																																		
의원신분증표기	20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사진		30mm×40mm																																																																			
한글성명	20pt	나눔명조OTF	2타 피어쓰기																																																																		
영문성명	10pt	HY용종도	1타 피어쓰기																																																																		
기관명(한글)	17pt	HT옛글	가운데 정렬																																																																		
기관명(영문)	8pt	윤고딕 120	가운데 정렬																																																																		
남원시의회의원 표기	18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8pt	윤고딕 130	내포문 윤고딕 135 왼쪽 정렬																																																																		
신분증명 문안	7pt	윤고딕 130	가운데 정렬																																																																		
발급일자	7pt	윤고딕 135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장의 명외	9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 직인			7.9mm×8.1mm																																																																		
의회 주소	13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의회 전화번호	13pt	HY용종도	가운데 정렬																																																																		
의회취장 배경			42.6mm×39.4mm																																																																		

현 행	개 정 안																																						
<p>[별지1호]</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신분증 발급대장</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결재란</th> <th>신분증 번호</th> <th>발급 연월일</th> <th>성명</th> <th>주민등록 번호</th> <th>신규 재발급</th> <th>회수 여부</th> <th>재발급 사유</th> <th>반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결재란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반환	비고											<p>[별지1호]</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신분증 발급대장</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결재</th> <th>신분증 번호</th> <th>발급 연월일</th> <th>성명</th> <th>생년월일</th> <th>신규 재발급</th> <th>회수 여부</th> <th>재발급 사유</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결재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비고									
결재란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반환	비고																														
결재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비고																															
<p>[별지2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신분증 재발급 신청서</p> <p>1. 성명 : </p> <p>2. 주민등록번호 : </p> <p>3. 신분증 번호 : </p> <p>4. 재발급 신청사유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div>	<p>[별지2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신분증 재발급 신청서</p> <p>1. 성명 : </p> <p>2. 생년월일 : </p> <p>3. 신분증번호 : </p> <p>4. 재발급 신청사유 : </p> <p>첨부 : 사진 1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남원시의회의장 귀하</p> </div>																																						

남원시 공고 제2016 - 1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2월 1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향교동	도로	소로	1-17호	향교동 246-3 ~향교동 133-5	L=90m B=10m	2016. 2	남원시	
							2016. 8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왕정동	도로	소로	3-41호	왕정동 114-5 ~왕정동 139-3	L=60m B=6.0m	2016. 2	남원시	
							2016. 6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남원시장
 - 나.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5)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공 사 명 :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읍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향교동	246-3	철	383	246-3	170	남원시					
2	남원시	향교동	267-6	철	96	267-6	61	남원시					
3	남원시	향교동	267-2	철	962	267-2	590	남원시					
4	남원시	향교동	992-1	철	85	992-1	50	남원시					
5	남원시	향교동	133-5	철	180	133-5	82	남원시					

공 사 명 :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왕정동	139-3	도	49	139-3	49	남원시					
2	남원시	왕정동	584-1	구거	3242	584-1	277	국(농림축 산식품부)					